

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서상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74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25일

발 의 자: 서상열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곽향기, 김경훈,  
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 
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 
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 
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 
김형재, 김혜지, 남창진,  
도문열, 문성호, 민병주,  
박상혁, 박 석, 박성연,  
박영한, 박춘선, 박칠성,  
서준오, 소영철, 송경택,  
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 
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 
윤영희, 이경숙, 이상욱,  
이성배, 이영실, 이용균,  
이원형, 이종태, 이희원,  
장태용, 정지웅, 채수지,  
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 
허 훈, 홍국표, 황유정,  
황철규 의원(55명)

## 1. 제안이유

- 지역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들이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사를 주최할 시 지역구 내 시립체육시설과 같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
- 그러나, 지역 주민 단체들이 마을 행사 등을 목적으로 시설 이용시에 별도 이용료 감면을 받지 못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
- 이에, 지역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관련 이용료 일부 감면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,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#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5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

별표 5의 프로그램,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의 금액란 중 “50,000~65,000”을 “35,000~65,00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
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 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</p> <p>가. ~ 마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바. (생략)</p> <p>[별표 5]                      상업사용료(제7조제1항 관련)                      (1일, 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금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left;">프로그램,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판매부스 1개당(5㎡ 기준) 50,000~65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금 액	프로그램,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	판매부스 1개당(5㎡ 기준) 50,000~65,000	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</p> <p>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바. <u>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</u></p> <p>사. (현행 바목과 같음)</p> <p>[별표 5]                      상업사용료(제7조제1항 관련)                      (1일, 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금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left;">프로그램,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판매부스 1개당(5㎡ 기준) 35,000~65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금 액	프로그램,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	판매부스 1개당(5㎡ 기준) 35,000~65,000
구 분	금 액								
프로그램,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	판매부스 1개당(5㎡ 기준) 50,000~65,000								
구 분	금 액								
프로그램,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	판매부스 1개당(5㎡ 기준) 35,000~65,000								